# 선박 및 선박용 물건 형식승인 시험품목 확대

방재시험소는 1988년 3월 8일 선박 안전법과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운항만청으로 부터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. 지금까지 소화기, 스프링클러 헤드 등 10개 품목으로 한하여 지정을 받았으나 1989년 5월 17일 소화펌프, 소화호스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추가지정을 받았다.

이를 계기로 방재시험소는 국가대행 시험기관으로서 형식승인 시험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선박에 대한 화재위험 관리에도 과학적으로 대처, 이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다.

**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품목**

| 기 존 시 험 품 목 | | 추 가 시 험 품 목 | |
|---|---|---|---|
| 자동확산형 소화기, | 포말 소화기 | 소화펌프 | 소화호스 |
| 분말 소화기 | $CO_2$ 소화기 | 노즐 | 수분무장치 |
| 포말소화약제, | 분말소화약제 | 국제육상시설연결구 | 방연마스크 |
| 스프링클러 헤드, | 화재탐지기 ( 감지기 ) | 자장식 호흡구 | 방연헬멧 |
| 방화문, | 격벽 또는 갑판에 사용하는 방화용제품 | | |
| | 계 10 품목 | | 계 8 품목 |

# 국내 최초로 노르웨이 선급협회(D.N.V) 형식승인을 위한 선박용 제품 시험

시험소에서는 현재의 시설 및 축적된 시험기술로서 국내 최초로 노르웨이 선급협회(D.N.V)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선박용 제품의 성능 및 환경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. 이 시험은 지금까지 국내에 시험기기 및 시험기술이 없어 형식승인 시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분야로 시험소의 기술수준을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.

이번에 의뢰된 시험체로 선박용 수신기, 부수신기, 발신기, 이온화식 연기감지기, 광전식 연기감지기,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로서 1개월 이상의 시험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.